

의안번호	2216086
의 퇴 인	이해식의원
회 답 일	2026.5.29.
추계번호	26B023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시·도지사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6억 4,400만원, 2031년 8억 8,8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99억 3,200만원(연평균 39억 8,6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안 제12조)	444	888	888	888	888	3,996	799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 등 (안 제41조의2 신설)	3,200	7,568	4,172	—	—	14,940	3,187
합계	3,644	8,456	5,060	888	888	18,936	3,986

- 주 1. 본 추계는 시·도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계획이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향후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과 관련한 대통령령이 마련되고, 각 시·도의 사업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2.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제2항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u>인력의 양성</u>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1)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2조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1항) • 둘 수 있다. → 두어야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23조제3항 신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¹⁾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지하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제3항 신설)	재량규정
4	안 제34조제2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5	안 제41조의2 신설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 등)	시·도지사는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 지도(이하 “지반침하 안전지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제1항 신설)	의무규정
		시·도지사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제2항 신설)	의무규정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6조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제3호) 개정안은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하안전관리 인력의 양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²⁾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 관리계획³⁾을 수립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⁴⁾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각 기관별 지하안전관리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될 사항으로, 이는 국가, 시·도, 시·군·구가 수립하는 관련 기본계획, 집행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내용과 추진방식에 따라 관련 내용과 소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2	안 제12조 (지방지하안전위원회)	○	• (추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현행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실적자료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
3	안 제23조제3항 신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	• (제3호) 개정안은 현행법상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지질·기후 등 환경적 특수성과 지하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하개발사업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 평가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로 지정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와 해당 사업의 건수 등을 현시점에 특정하기 곤란하여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집계 기준으로, 2024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447건의 건당 평균 대행비용은 5,811만원(건당)으로 나타남

2) 법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법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기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관리계획을 수립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4	안 제34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	•(제3호)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정기점검 및 실태점검의 내용과 횟수증가로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확보, 점검체계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의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해질 사항으로 현시점에 그 내용과 비용 수준을 특정하기 곤란하고, 정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소요 비용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관리 실태점검 비용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하시설물 대상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⁵⁾ 및 별표 3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
5	안 제41조의2 신설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 등)	○	• (추계)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 지도(이하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므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지 않은 시·도에서 해당 지도 제작에 따른 추가재정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4) 법 제8조(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방법 및 주기]

안전점검	세부내용
지반침하 육안조사	연 1회 이상 실시
공동(空洞)조사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종전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자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예상되는 비용을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유사사례의 사업비를 참고하여 각 시·도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비용을 추산하며, 현재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중인 서울시의 경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대상에서 제외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지방지하안전위원회(안 제12조)

- 개정안에 따라 현재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148개 지방자치단체(시·도 1개 및 시·군·구 147개)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추산함

[표 2]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단위: 개, 회)

구분	설치 지방자치단체 수	개회 횟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시·도 (17)	16	14	18	18	13	63
시·군·구 (226)	79	38	53	65	71	227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물량) 추계기간 중 첫 2년 동안 148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가 균등하게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함
 - 시·군·구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현황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므로, 시·도 기준과 동일한 운영방식(민간 위원 10인, 연 2회 개최)을 준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위원회 운영비용) 위원회 운영비용은 회의참석 사례금으로 민간위원 10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회의당 300만원 소요 예상
 -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건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⁶⁾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이상의 가정에 따라 148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3]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신규) 설치 지방자치단체 수(개소)	74	74	—	—	—	148
(누적) 설치 지방자치단체 수(a, 개소)	74	148	148	148	148	—
연간 개최일수(b, 회)	2	2	2	2	2	—
위원회운영비용(c, 백만원/회당)	3	3	3	3	3	—
합계(a×b×c, 백만원)	444	888	888	888	888	3,996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실제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구성·회의 운영 등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6)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나.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안 제41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시·도지사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중인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해당 지도를 제작할 때 소요비용을 추산함
- 각 시·도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계획을 알 수 없어, 유사사례인 서울시의 지반특성지형도 제작 연구용역 사업비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
 - (유사사례)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지반특성분석지도 모델 개발 용역” 사업(2025.7~2026.12, 18개월)을 참고함

[표 4] 서울특별시 지반특성분석지도 모델 개발 용역 주요내용

		주요 내용		
과업의 목적		•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하는 지반침하로 인한 시민 불안감 증대를 해소하고,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안전의식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 지반특성분석지도 작성을 통해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등에 대한 시민 불안감 완화 • 지반특성별 효율적인 관리체계 수립 • 서울시 ‘우선정비구역도 모델’을 개선하여 신뢰도 높은 서울시 지반특성분석지도 작성		
과업의 내용	1차년도	• 관련 법규 및 현황조사 • 모델 개발을 위한 서울시 지반침하, 지하수 및 지반 정보 등 데이터 구축 • 구역(또는 등급) 지정 기준 제시 • 구역(또는 등급)별 관리체계 제시 • 우선검토 대상의 내용, 범위, 관리방안 제시 • 우선검토 대상의 공론화를 통한 공개여부 검토 등 • 시추공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정밀 지반정보 작성		
	2차년도	• 모델 개발을 위한 서울시 지반침하, 지하수 및 지반 정보 등 데이터 구축 • 지반침하 유발인자의 동적 데이터 분석 • 지반특성 분석모델 개발 • 구역(또는 등급) 지정 기준 제시 • 구역(또는 등급)별 관리체계 제시 • 지역별 지반특성 및 관리방안 제시 • 공개 대상 내용·범위·관리방안 제시 및 지도 작성 • 데이터 자동갱신 알고리즘 개발 • 고정밀 지반예측 모델링 모듈 구축 • 시스템 연계 방안 모색		
사업비(단위: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400	596	996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반특성분석지도 모델 개발 용역” 과업내용서, 2025.7.

- (추계대상) 서울시 외 15개⁷⁾ 시·도에서 서울시 수준의 지하지형도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
 - (단가) 사업비 단가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2년간 9.9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 1년차 4억원, 2년차 5.96억원
 - 지하안전 지도 제작주기, 제작기간 등이 규정되지 않아 추계기간 중 첫 2년 이내에 16개 시·도에서 지도를 1회(제작기간: 2년) 제작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2억원, 2029년 41억 7,2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49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지도제작 지방자치단체 수 (개소)	1년차(a)	8	7	—	—	—	15
	2년차(b)	—	8	7	—	—	15
단가(백만원)	1년차(c)	400	400	—	—	—	—
	2년차(d)	—	596	596	—	—	—
추가재정소요 (a×c + b×d)		3,200	7,568	4,172	—	—	14,940

주: 본 추계는 시·도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계획이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향후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과 관련한 대통령령이 마련되고, 각 시·도의 사업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시·도지사가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6억 4,400만원, 2031년 8억 8,8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89억 3,6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7)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전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설치·운영(A)	444	888	888	888	888	3,996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B)	3,200	7,568	4,172	—	—	14,940
합계(A+B)	3,644	8,456	5,060	888	888	18,936

- 주 1. 본 추계는 시·도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계획이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향후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과 관련한 대통령령이 마련되고, 각 시·도의 사업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2.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시·도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계획이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향후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과 관련한 대통령령이 마련되고, 각 시·도의 사업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